

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193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5월 27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여유자금 예치금 조정 및 신규사업 편성 등으로 2024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.
- 나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후대응기금은 1차 운용계획 변경 심의로 사업비 증액 및 신규사업 편성 등 정책사업비 51,007백만원에서 52,709백만원으로 1,702백만원 증액, 예치금 20,447백만원에서 18,745백만원으로 1,702백만원 감액한 바 있음(20% 미만 변경)
- 나. 2023회계연도 결산으로 수입계획상 예치금회수 금액이 40,416백만원에서 47,643백만원으로 7,227백만원 증가하였고, 이에따라 지출계획상 예치금이 18,745백만원에서 25,972백만원으로 7,227백만원 증액됨(20% 초과 변경)
- 다. 지출계획 정책사업비를 52,709백만원, 예치금을 25,972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.

라. 수입계획 변경 내용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당 초 (A)	변 경 (B)	증 감 (C=B-A)
계 (순 수입)	71,464 (19,048)	78,691 (19,048)	7,227 -
예 치 금 회 수	40,416	47,643	7,227
예 탁 금 원 금 회 수	12,000	12,000	-
융자금회수(이자포함)	12,374	12,374	-
이 자 수 입	2,055	2,055	-
기 타 수 입	3,169	3,169	-
전 입 금	1,450	1,450	-

마. 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: 백만원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 초(A)	1차 변경	2차 변경(B)	증 감(B-A) (증감률)
합 계 (순 지 출)	71,464 (51,017)	71,464 (52,719)	78,691 (52,719)	7,227 (10.1%) 1,702 (3.3%)
일 반 예 산 (재 무 활 동)	20,447	18,745	25,972	5,525(27.0%)
보 전 지 출	20,447	18,745	25,972	5,525(27.0%)
여 유 자 금 예 치	20,447	18,745	25,972	5,525(27.0%)
기 후 변 화 대 응 강 화	51,007	52,709	52,709	1,702 (3.3%)
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	51,007	52,709	52,709	1,702 (3.3%)
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지원 사업	1,000	1,000	1,000	-
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및 조성	1,200	1,200	1,200	-
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 지원	30,734	30,734	30,734	-
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지원	1,570	1,570	1,570	-
민간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	1,006	1,006	1,006	-
서울형 햇빛 발전 지원	500	500	500	-
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	6	6	6	-
공동주택 전기안전 지원사업	250	250	250	-
주민DR 서비스 확대사업	242	242	242	-
동북권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사업	11,014	11,014	11,014	-
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	1,025	1,025	1,025	-
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 지원	2.7	2.7	2.7	-
지열 운영비 시범 지원사업	500	500	500	-
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	1,957	2,047	2,047	90 (4.6%)
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 개최		290	290	290 (100%)
저탄소건물 인증제도 시행		100	100	100 (100%)

	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		150	150	150 (100%)
	봉제원단폐기물 집하장 설치 운영		90	90	90 (100%)
	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		252	252	252 (100%)
	커피박 수거·재활용 활성화		500	500	500 (100%)
	음식물쓰레기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		230	230	230 (100%)
행	정	운	영	경	비
	기	본	경	비	
	기	금	관	리	비
		10	10	10	-
		10	10	10	-
		10	10	10	-

※ 최종 의회 의결액(당초, 제321회 정례회)대비 여유자금 예치금 20% 초과(27%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정책팀 강동훈(☎ 2133-3517)